

【 8 】 양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제출년월일 2002. 8. 26

제출자 양주군수

1. 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2001.7.24)됨에 따라 일부 업무가 군수에게 위임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양주군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을 정함(안 제3조)
- 나. 원전도 검사업무 위탁관리 질자 및 사격을 정함(안 제4조 및 세5조)
- 다. 현수막 지정계시대 및 벽보판 관리의 위탁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 라.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종류, 내용 및 시간 등을 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마.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14조)
- 바.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절차를 정함(안 제15조)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군수는 영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조 및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물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교통·환경·도시·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1인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디자인 등 옥외광고물 관련 분야 전문가 2인
3. 기타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④ 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 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높이 4미터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안의 세로길이 4미터이상인 돌출간판의 표시 허가 ·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지주 이용 간판의 상단의 높이가 건물높이를 초과하는 경우 포함)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이상으로서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안건
 2. 기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 관리 업무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안건
- ③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 전문가 ·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안전도검사의 업무 위탁등) ①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 · 건축 · 전기분야의 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도내 또는 군내에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어야 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검사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에 군수는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제6조제2항에 의한 안전도 검사업무의 위탁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2. 사무실
3. 작업차량·사다리·절연저항계·카메라·망원경 및 기타 군수가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및 장비

제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등) ①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중에서 1인이상의 자를 지정하여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군수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군수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령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지체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게시시설등의 관리 및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위탁)** ① 군수는 현수막 지정개시대 및 지정벽보판(이하 “게시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광고사업협회등에 위탁하여 그 게시시설을 관리하게 하거나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게시시설관리 및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게시시설의 관리 및 불법옥외광고물정비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자의 성명·명칭·주소·위탁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미 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 군수는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군수는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1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의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
 3. 교육실시방법·수강절차·비용
 4.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군수는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 즉시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12조(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자의 임무·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11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실시일 4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2,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수수료는 별표3,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수수료는 별표4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중 1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양주군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5와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5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 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6과 같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등에 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이 조례 시행당시 도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도 조례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2.이 조례 시행당시 도 조례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13조의 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도 조례에 의한다.

3.이 조례 시행당시 도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와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도 조례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위탁받은 자가 시행할 수 있다.

【별표 1】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종류·내용 및 시간(제11조관련)

종 류	교育시간	교 육 내 용	교 육 대 상	비 고
신규교육	6시간	<input type="radio"/> 관계법규 - 3시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로법 등) <input type="radio"/> 표시에 관한 사항 - 3시간(색채, 재료,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input type="radio"/>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필요시 종업원도 교육실시	<input type="radio"/> 옥외광고업자 에 대한 교육이 없는 경우에 광고업 신고 후 최초로 실시 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행정처분에 의한교육	3시간	<input type="radio"/> 관계 법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로법 등)	<input type="radio"/>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보수교육	3시간	<input type="radio"/> 관계법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로법 등)	<input type="radio"/> 옥외광고업자 (대표자) ※ 필요시 종업원도 교육실시	<input type="radio"/> 관계법령의 제·개정시 실시
기타교육	별도정함	<input type="radio"/>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군수가 정하여 공고함		

〔별표2〕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제13조 관련)

가. 일반 옥외광고물

(단위 : 원)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준	수수료
1. 가로형간판	개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1,000
가. 일반가로형간판 (나항외의 간판)		· 20제곱미터 이하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4,000 2,000
나. 건축 측·후면의 4층이상 판류 이용간판 (영 제15조제4호)			
2. 세로형 간판	개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000 1,000
3. 둘출간판	개	· 3.5제곱미터 이하 · 3.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이·미용업소 및 의료 기관·약국 표지등	10,000 500 3,000
4. 공연간판	개	· 가로형간판 가항과 같음 · 지주이용간판과 같음	
가. 벽면이용간판			
나. 지주이용간판			
5. 옥상간판	개	· 10제곱미터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0 4,000
6. 지주이용간판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2,000 2,000
7. 애드벌룬	개		
가. 공중에 띄우는 것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10,000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준	수수료
8.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가. 일반공공시설물 나. 전주·가로등주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10개 이하 · 10개 초과시 5개당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0 1,000 3,000 2,000
9. 교통시설(지하도) 이용 광고물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제곱미터 이하 · 5제곱미터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4,500 5,000
10.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나. 비행기·선박 양측면 다. 차량 양측면	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0,000 10,000 2,000
11. 선전탑	개		3,000
12. 아취광고물	개		3,000
13. 창문이용 광고물	개		3,000
14. 현수막 가. 현수막 나. 현수막 게시시설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00 1,000 5,000 1,000
15. 벽보	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매당 	2,500
16. 전단	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매당 	2,500
17. 광고물 중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수조명을 하는 광고물은 제외)	개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 의 2배를 적용	

나.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단위 : 원)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준	수수료
1. 시내·시외·전세 버스 외부광고	대		2,000
2. 영업용 화물자동차 외부광고	대		1,500
3. 영업용 택시광고	대		1,000
4. 차량탑재영상광고	대		350,000
5. 공중전화부스이용 광고	개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6. 축구조형물광고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2,000 2,000
7. 홍보탑광고	개		15,000
8. 벽면이용광고	개	· 20제곱미터 이하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4,000 2,000
9. 깃발이용광고	개	· 10개 이하 · 10개 초과시 5개당 가산	3,000 2,000

* 광고물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법에 의거 표시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일반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 수수료의 징수방법

- (1)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중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본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영 제9조제1항 관련)
 - 광고물등의 규격·위치·장소변경은 수수료의 전액 적용
- (2)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영 제9조제3항 관련)

【별표3】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 (제13조 관련)

(단위 : 원)

광고물등의 종류 (계시시설 포함)	적 용 기 준	수수료
1. 옥상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5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7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7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000 38,000 1,300
2.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 으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3.5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000 20,000 1,600
3. 건물 4층 이상의 설치하는 가로형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6제곱미터 미만 · 면적 6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000 20,000 800
4. 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 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1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000 20,000 800
5. 영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미터이상의 계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 하는 애드벌룬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의 옥상간판에 준함 · 4의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6. 현수막계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 4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4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000 600
7. 기타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별표4】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 (제13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수수료	관련 법 규	비 고
신 규	업소당	15,000	법 제17조제3호	
변경	업소당	7,500	법 제17조제3호	

※ 옥외광고업의 변경신고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영 제41조제3항)

- (1) 관할구역내에서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때
- (2) 성명, 업소명, 영업내용을 변경한 때

【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제14조제1항관련)

위반사항	부과액
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 ·벽보·전단을 표시한 자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5만원
(나) 연면적 1제곱미터이상 2제곱미터미만	20만원
(다) 연면적 2제곱미터이상 3제곱미터미만	40만원
(라) 연면적 3제곱미터이상	8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 의 0.5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2) 그밖에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미만	3만원
(나) 연면적 1제곱미터이상 2제곱미터미만	10만원
(다) 연면적 2제곱미터이상 3제곱미터미만	30만원
(라) 연면적 3제곱미터이상	5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 의 0.5제곱미터당 5만원을 가산한 금액미만
나. 현수막	
(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미만	5만원
(나) 면적 3제곱미터이상 5제곱미터미만	10만원
(다) 면적 5제곱미터이상 10제곱미터미만	20만원
(라) 면적 10제곱미터이상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 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미만
(2) 지주·지정계시대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5만원

위 반 사 항	부 과 액
(나) 연면적 3제곱미터이상 5제곱미터미만	10만원
(다) 연면적 5제곱미터이상 10제곱미터미만	20만원
(라) 연면적 10제곱미터이상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 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 산한 금액미만
(3) 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미만	5만원
(나) 면적 3제곱미터이상 5제곱미터미만	10만원
(다) 면적 5제곱미터이상 10제곱미터미만	20만원
(라) 면적 10제곱미터이상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 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 산한 금액미만
(4) (1) 내지 (3)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 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 해당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장당 1만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장당 2만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장당 5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장당 1만원
2.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 수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10만원
나. 연 2회 위반자	30만원
다. 연 3회이상 위반자	50만원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 (1) 과태료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계시를 (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을 포함한다.
-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시 소수점 2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 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 (4) 입간판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은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등은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5) 최초 1년 이내에 반복·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표6】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15조제1항관련)

위 반 사 항	부 과 액
1.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가. 면적 5제곱미터미만 나. 면적 5제곱미터이상 10제곱미터미만 다. 면적 10제곱미터이상 20제곱미터미만 라. 면적 20제곱미터이상	2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에 20제곱미터 초과면 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미만
2. 돌출간판 가. 연면적 5제곱미터미만 나. 연면적 5제곱미터이상 10제곱미터미만 다. 연면적 10제곱미터이상 20제곱미터미만 라. 연면적 20제곱미터이상	2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에 20제곱미터 초과면 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미만
3. 지주이용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연면적 3제곱미터미만 나. 연면적 3제곱미터이상 5제곱미터미만 다. 연면적 5제곱미터이상 10제곱미터미만 라. 연면적 10제곱미터이상	3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 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미만
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건물 4층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가. 연면적 5제곱미터미만 나. 연면적 5제곱미터이상 10제곱미터미만 다. 연면적 10제곱미터이상 20제곱미터미만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위 반 사 항	부 과 액
라. 연면적 20제곱미터이상 50제곱미터미만	200만원
마. 연면적 50제곱미터이상	300만원에 50제곱미터 초과면 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미만
5. 선전탑, 아취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가. 선전탑, 아취광고물	
- 연면적 20제곱미터이하	30만원
- 연면적 21제곱미터이상	60만원 + 1개당 5만원
나.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30만원
- 애드벌룬(공) 2개	50만원
- 애드벌룬(공) 3개이상	70만원 + 1개당 5만원
6.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시계탑 조명탑 · 안내탑 · 일기예보탑등	
- 연면적 20제곱미터이하	30만원
- 연면적 21제곱미터이상	70만원 + 1제곱미터당 5만원
나. 교통안내소	※가로형 간판에 준함
다. 안내게시판 · 지정벽보판 · 버스승강장 · 택시 승강장 · 관광안내도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라.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 · 도지 지사가 인정한 편익시설물	※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마. 가목 내지 라목외의 공공시설물	
- 연면적 15제곱미터이하	20만원
- 연면적 16제곱미터이상	30만원 + 1제곱미터당 5만원
7.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8.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1) 무인비행선	
-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	100만원

위 반 사 항	부 과 액
- 연면적 11제곱미터이상	100만원 + 1제곱미터당 10만원
(2) 유인비행선	
-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	200만원
- 연면적 11제곱미터이상	200만원 + 1제곱미터당 10만원
나. 그 밖의 교통수단	
(1) 연면적 3제곱미터미만	10만원
(2) 연면적 3제곱미터이상 5제곱미터미만	30만원
(3) 연면적 5제곱미터이상	50만원에 5제곱미터 초과면적 의 1제곱미터당 5만원을 가산 한 금액 미만
9. 그 밖에 유형의 광고물	※가로형 간판에 준함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 (1) 이행강제금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을 포함한다.
-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시 소수점 2자리이하는 절사한다.
- (3) 입체형·모형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중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은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등은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이용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5)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등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처리기간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신청서				30일
신청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소명 (단체명)			
	④ 주 소			
⑤ 영업장 소재지		⑥ 전화번호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 및 양주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양주군수 귀하				
구비서류 : 양주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및 인력 · 시설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서			
수 탁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소명 (단체명)		
	④ 주 소		
⑤ 영업장소재지			
⑥ 위탁기간	20 . . . ~ 20 . . . (년 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0조 및 양주군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군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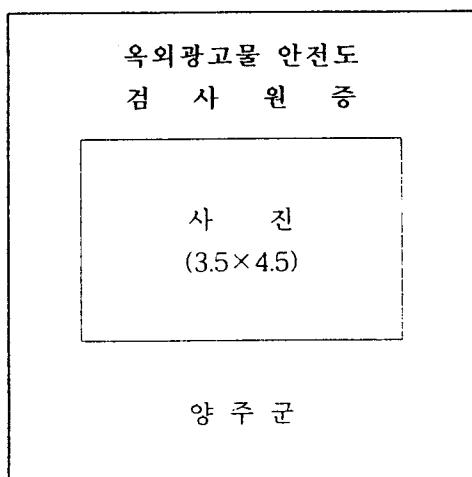
【별지 제4호서식】

○ 규격 : 가로 6cm × 세로 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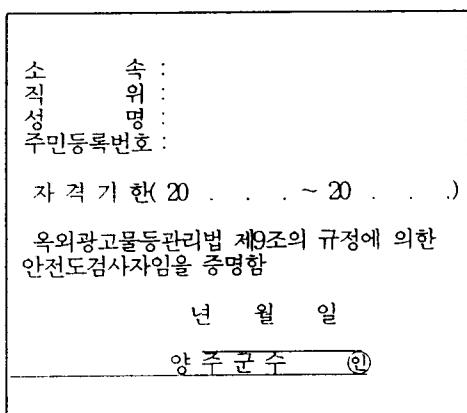
○ 바탕색 : 연녹색

○ 글자 : 검정색

전면



후면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처리기간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3 일	
신청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소명		④ 전화번호
	⑤ 주소		⑥ 신고번호
⑦ 재교부신청사유			
양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 광고업 신고필증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⑨
양주군수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수료필증	
① 교육 과정명	
② 교육수료일자	
수 강 자	③ 성 명
	④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2조 및 양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군 수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①연번	②교육 과정명	③교육 수료일자	④소속 업소명	⑤성 명	⑥주민등록 번 호	비 고

【별지 제8호서식】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 불참신고서

신고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소명		④ 영업장소재지	
	⑤ 주소			
교육계획	⑥ 일시			
	⑦ 장소			
⑧ 불참사유				

양주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주군수 귀하

구비서류 :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별지 제9호서식】

제 호		처리기간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위탁 지정신청서		30 일	
신 청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단체명)		
	④ 주 소		
	⑤ 영업장소재지		⑥ 전 화 번 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3조 및 양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卷之三

신청인

양주군수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없음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별지 제10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수 탁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단체명)		
	④ 주 소		
⑤ 영업장소재지			
⑥ 위 탁 기 간		20 . . . ~ 20 . . . (년 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3조 및 양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군 수			